#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 안 번 호 439 발의연월일 : 2018. 4. 4(수) 발 의 자 : 박종욱 의워

찬 성 자 : 박찬원, 함명섭

장문혁, 이범연

임영순 의원

#### 1. 주 문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56조 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라 「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」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○ 심사기간은 2018년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.

#### 2. 제안이유

○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「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」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 6명으로 구성 하고자 함.

### 3. 참고사항: 관계법령

- ○「지방자치법」제56조
- O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제2조

# 심 사 계 획

### 1. 활동목적

- O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건전재정 운영
- O 신속한 의사진행 및 의결기관의 역할 강화

### 2. 심사안건

-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O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
## 3. 활동기간

O 2018년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.

# 4. 구 성

O 박찬원 의원, 함명섭 의원, 박종욱 의원, 장문혁 의원, 이범연 의원, 임영순 의원

# 5. 운영계획

일시	차 수	내 용	비고
4.10	제1차	1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	
(화)	예결특위	2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	
	(10:00)	3.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	
		O 개요설명(기획감사실장)	
		○ 검토보고(전문위원)	
		O 계속비사업(기획감사실장)	
		O 세입예산(재무과장)	
		O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	
		- 의회사무과, 기획감사실, 읍·면, 문화관광과	
		주민생활지원과(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),	
		종합민원과, 자치행정과	
4.11	제2차	<ol> <li>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</li> </ol>	
(수)	예결특위	O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	
	(10:00)	- 재무과(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), 경제체육과	
		환경위생과(수질개선특별회계), 산림과,	
		안전건설과, 도시주택과, 올림픽시설과	
		보건사업과, 농축산과, 기술지원과,	
		상하수도사업소(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)	
4.12	제3차	1.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	
(목)	예결특위	O 계수조정, 심사보고서 채택	
	(11:00)		

## 【관계법령】

#### □ 지방자치법

-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수 있다.
  -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 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

#### □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

- 제2조(설치) ① 평창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는「지방자치법」제56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(이하 "본회의"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- 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(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)의 심사를 포함하다.
  - ③ 의회는 의원윤리 및 징계·자격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다.
  - 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간 내에 활동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한 안건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.